

의안번호	2211268
의 퇴 인	이해민의원
회 답 일	2025.9.5.
추계번호	25D3641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법률정보기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며, 법률정보기술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300만원, 2031년 5,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억 2,300만원(연평균 7,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법률정보기술 산업 육성 기본계획	45.32	—	—	—	—	45.32	9.06
법률정보기술 산업 실태조사	33.00	—	34.33	—	35.71	103.04	46.25
법률정보기술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15	15	15	15	15	75	15
합 계	93.32	15	49.33	15	50.71	223.36	70.31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무부장관은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 (실태조사)	법무부장관은 법률정보기술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과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정보기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7조 (법률정보기술산업정책심의위원회)	법률정보기술산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률정보기술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법률정보기술서비스사업자 대표 또는 임원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와 법률업무 자격자 또는 그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에 해당하는 임원의 수는 같도록 구성 － 법무부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법률정보기술서비스사업자 대표 또는 임원 － 법률업무 자격자 또는 그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 법률정보기술산업과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의무규정
4	안 제10조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	법무부장관은 우수한 법률정보기술서비스사업자(이하 “우수서비스사업자”라고 함)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1조 (인증서와 인증마크)	법무부장관은 인증받은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2조 (법률정보기술산업 연구·개발 지원)	법무부장관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법률정보기술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법무부장관은 법률정보기술산업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함)의 양성 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4조 (법률정보기술산업 해외진출 지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행사 개최, 해외시장조사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15조 (법률정보기술산업 창업지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정보기술산업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6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2	안 제6조 (실태조사)	○	
3	안 제7조 (법률정보기술산업정 책심의위원회)	○	
4	안 제10조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	×	법무부장관의 인증 및 인증마크 제작 등에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인증 대상 우수사업자의 범위 및 규모를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5	안 제11조 (인증서와 인증마크)	×	
6	안 제12조 (법률정보기술산업 연구·개발 지원)	×	법률정보기술사업의 규모 및 지원방법, 지원비율 등을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7	안 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방법 및 규모를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8	안 제14조 (법률정보기술산업 해외진출 지원)	×	법률정보기술사업의 해외시장 진출 규모 및 방법을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9	안 제15조 (법률정보기술산업 창업지원)	×	법률정보기술산업분야에 대한 창업지원의 규모 및 방법을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10	안 제16조 (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정보기술산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방법을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5조에 따른 법률정보기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안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 예산 사례를 준용함
 -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함
-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¹⁾를 적용함
- 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법률정보기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 법률정보기술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법률정보기술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계의 전제에 따라 유사 기본계획의 수립에 소요된 예산을 준용
 - 제정안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책연구용역은 2027년에 한번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른 법률정보기술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유사한 정책연구용역 소요예산을 참고
 - 2020년 이후 법무부가 수행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책연구용역 소요예산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평균 소요예산은 2027년 4,532만원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5년 4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3	1.9	2.0	2.0	2.0	2.0	2.0

[표 2] 법무부 기본계획 수립 관련 용역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정책연구용역제목	실시년도	소요예산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21	69.5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평가 및 제4차 NAP 과제 제시	2022	47.5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35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23	15
평균	-	41.75

자료: 법무부

□ 실태조사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0년 이후 법무부가 실시한 실태조사가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소요된 예산을 준용

- 제정안에 따른 법률정보기술산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유사한 정책연구용역 소요예산을 참고
- 제정안은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에 2027년, 2029년, 2031년 3번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

[표 3] 법무부 실태조사 관련 용역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정책연구용역제목	실시년도	소요예산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실태조사 및 분석	2021	20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차보증금 보호방안 연구	2022	19.9
지역기반 비자 사업 평가지표 개발	2023	20.91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우수인재 실태조사 및 주요국 사례 연구	2023	63.65
평균	-	31.12

자료: 법무부

- 2020년 이후 법무부가 수행한 실태조사가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소요예산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4] 법률정보기술산업 실태조사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법률정보기술산업 실태조사	33.00	-	34.33	-	35.71	103.0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법률정보기술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안 제7조)

-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간 1,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제정안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되, 안 제7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법률정보기술서비스사업자 대표 또는 임원인 위원의 수와 제3호에 따른 법률업무 자격자 또는 그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인 위원의 수가 같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추계에서는 제정안 제7조제3항 각 호²⁾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각각 5명으로 같도록 구성하여 민간위원의 수가 15명인 것으로 가정
 - 법무부의 유사 위원회인 공증제도개선위원회(8명으로 구성되고 전원에게 회의참석수당 지급)가 연간 4회 회의를 개최하므로 이와 유사하게 연간 4회 운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15명의 외부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³⁾ 지급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연간 1,500만원으로 추정

2)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7조(법률정보기술산업정책심의위원회)

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법률정보기술서비스사업자 대표 또는 임원
3. 법률업무 자격자 또는 그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4. 법률정보기술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다. 추계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법률정보기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며, 법률정보기술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억 2,300만원(연평균 7,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법률정보기술산업육성 기본계획	45.32	-	-	-	-	45.32	9.06
법률정보기술산업 실태조사	33.00	-	34.33	-	35.71	103.04	46.25
법률정보기술산업정책심 의위원회 설치	15	15	15	15	15	75	15
합 계	93.32	15	49.33	15	50.71	223.36	70.31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